

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·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수정동의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'99. 6. 17
제 출 자 : 유 동 찬 의원

1. 수정이유

- 작물재배시기와 관계없는 시험의뢰에 대하여 수시로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
- 불합리한 시험거부 조항 삭제

2. 주요 골자

- 제4조 제2항 : 시험의 의뢰는 시험목적, 처리기간 및 작물재배시기등을 감안하여 여름작물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, 겨울작물은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신청한다. 다만, 작물재배시기와 관계없는 시험의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.
- 제7조 : 제목 “거절”을 “거부”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며 내지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.